

함양군 ·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서

함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와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상호협력 하에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함양군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호협력 하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①이 협약의 기간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업비 정산을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에 대한 해지사유 발생 시 해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방향) 군과 재단은 본 협약을 기반으로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 원칙하에 최대한 협력한다.

제4조(협력사항) 재단은 함양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제공하며, 군은 재단의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5조(역할분담) ① 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② 군은 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대상자모집, 지원사업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사업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6조(위탁사업비 교부) 사업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는 수행기관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7조(사업결과 및 정산결과 보고) ① 재단은 위탁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탁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위탁사업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군의 정산검사 결과 통보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군이 정하는 방법과 기한까지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은 재단에 대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보고 등을 요청하거나 현지조사·검사·질문 등을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검사·조사 결과 위탁사업에 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재단

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의 확보 등) ① 재단은 위탁사업 수행 시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은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의무 및 조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재단에게 이에 대한 시정, 필요한 조치의 실행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재단은 위탁사업 수행 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사건·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 군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재단은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 수행 시 취득한 중요정보 및 보안을 요하는 정보 등에 대한 비밀 유지

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수집 금지

② 재단은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군의 승인 없이 위탁사업과 관련한 중요정보 또는 개인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협의를 의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군은 재단이 협약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르고, 관계 법령 등이 없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군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협약의 증명)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당사자가 상호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2. .

함 양 군
군수 진 병 영 (인)



경 남 신 용 보 증 재 단
이사장 이 효 근 (인)

